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9. 3 선고 2021가단1141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

피 고 1. A
2. B
변 론 종 결 무변론
판 결 선 고 2021. 9. 3.

주 문

1. 가.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6. 23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7. 23.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141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다. 피고 A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2. 23.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245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조미옥

별지